
학생선수관리위원회 규정



장훈고등학교

학생선수관리위원회 규정

(2025.04.03. 일부 개정)

건강안전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장훈고등학교 학생선수(체육특기자)의 관리 및 학교 체육 전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발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며 체육행사를 기획하고, 학교 간 교류 및 교내외 대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며 우수 학생선수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선발하고 지속적인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며 학교 체육 시설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2조(위원회 구성)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포함 5~9명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교감이 맡으며, 부위원장은 체육부장 또는 운동부 감독교사가 담당한다.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체육 관련 교원
- 운동부 지도자
- 학부모 대표
- 체육 관련 전문가

제3장 기능 및 역할

제3조(위원회의 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체육 교육과정 운영 및 체육활동 증진 계획
2. 학생건강체력평가(PAPS) 운영 및 분석
3.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방안
4. 체육행사 및 교내외 체육대회 기획 및 운영
5. 학생선수(체육특기자) 선발 및 학습권 보호 대책
6. 학생선수 보호 및 인권 보장 정책 마련
7.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8. 학교 체육시설 및 장비 관리 및 확충 방안
9. 학교 체육 관련 예산 집행 및 운영 방안 심의
10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장 운영 및 회의 절차

제4조(회의 운영 및 의결 절차) 본 위원회는 필요시 정기회의(학기별 1회 이상) 및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위원 정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필요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5장 학생선수 보호 및 학습권 보장

제5조(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) 본 위원회는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. 학생선수의 출결 및 학습 관리를 위한 대체 수업,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. 대회 및 훈련 일정이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, 담

임교사 및 지도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.

제6조(학생선수 보호 및 인권 보장) 학생선수는 신체적·정신적 폭력 및 차별 없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 학생선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폭력(언어·신체적 포함)이 발생할 경우, 즉각적인 조사 및 조치를 시행한다. 학생선수의 훈련 및 경기 참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적절한 보호장비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.

제6장 체육 예산 및 시설 관리

제7조(체육 예산 및 재정 운영) 본 위원회는 학교 체육 관련 예산 집행 및 운영을 심의하며 투명성을 유지한다. 운동부 운영 회비, 대회 참가 비용, 체육시설 유지·보수 예산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. 체육활동 및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재정 내역은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하며,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8조(체육시설 및 장비 관리) 학교 내 체육시설 및 운동 장비의 유지·보수 및 확충 계획을 수립한다. 체육수업 및 운동부 훈련을 위한 시설 예약 및 관리 방안을 운영한다.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,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